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의 보증 촉진에 관한

특별보고자 보고서

-전환기 정의의 조치와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의 유산에 대한 대응 -

파비안 살비올리

사무총장의 코멘트

사무총장은 [인권이사회 결의 45/10](#)에 근거하여 제출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보증 촉진에 관한 특별보고자 파비안 살비올리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요지

이 보고서는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대하여 진실, 정의, 배상, 기념, 재발 방지 보증의 분야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제, 뛰어난 실천, 배운 교훈을 밝히고, 식민지화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 전 식민지 지배국, 전 식민지 독립국에 대해 권고한다.

목차

I. 들어가며	2
II.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살필 필요성	2
III. 식민지 시대의 상황과 전환기 정의에 대한 도전.....	3
IV. 식민지 시대와 역사적인 부정의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전환기 정의의 구성 요소.....	6
V. 결론	23
VI. 권고.....	24

I. 들어가며

1.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결의 45/10에 근거하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증의 촉진에 관한 특별보고자 파비안 살비올리가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특별보고자는 이 보고서에서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의 유산에 대처하기 위한 전환기 정의 조치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3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와 1차의 공개 협의가 국가, 시민사회 멤버, 피해자, 전문가 및 관계 이해관계자와 함께 행해졌다. 특별보고자는 전해진 응답에 감사한다.

2.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증의 촉진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임무에는 ‘경향, 진전 및 과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해 권고를 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¹⁾. 식민지 시대의 부정의에 관한 진실, 정의, 배상의 탐구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특별보고자의 관여에 특히 적합한 고유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 발표에 앞서 특별보고자는 각국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 문제에 임했다.²⁾

3. 다른 임무 보유자도 다른 입장으로나마 테마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및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노예제와 식민지주의에 뿌리를 둔 인종차별에 대한 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의 인권 의무를 다루고 있다.³⁾ 마찬가지로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전문가기구는 승인, 배상, 화해,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식민지주의의 문제를 검토해 왔다.⁴⁾ 최근에는 유엔 인권고등변무관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책임과 배상을 통해 노예제, 대서양 횡단 아프리카 노예무역, 식민지주의 유산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II. 식민지 시대에 일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살필 필요성

4. 식민지주의로 인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이러한 침해가 오늘날에

1) <https://undocs.org/en/A/HRC/RES/45/10>

2) 예를 들면 아래에 기재된 JPN 1/2016, KOR 2/2016, GBR 13/2020, KEN 3/2021, GBR5/2021 및 CAN 4/2021의 서한 참조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

3) <https://undocs.org/en/A/74/321>

4) <https://undocs.org/en/A/HRC/EMRIP/2019/3/Rev.1> 및 <https://undocs.org/en/A/HRC/45/38>

5) <https://undocs.org/en/A/HRC/47/53>

도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지난 40년간 전환기 정의에 의해 개발된 구성 요소 및 수단이 이러한 침해의 유산에 대한 대응에 유용한 교훈과 경험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이미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전환기 정의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는 전환기 정의는 결과만, 즉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의 침해만을 다루며, 구조적 폭력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조직적 배제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다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즉 비판자는 전환기 정의는 근본에 있는 구조적 불평등이나 역사적인 불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6. 하지만 전환기 정의는 독자적인 메커니즘, 즉 식민지의 과거와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다루는 전반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특히 피해자가 입은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배상 프로그램,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공적 사죄, 권리 침해의 경향, 원인, 결과에 포괄적으로 임하는 기념·교육 조치, 차별이나 인종차별을 영속시키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문화적·제도적 기준·구조, 프로세스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재발 방지 보증의 확립을 통해, 식민지 폭력의 더 깊은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식민주의의 유산에 맞서고 최종적으로 화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정당성과 지속성을 가져온다.

7. 특별보고자는 전환기 정의 과정이 전체적이고 적절하게 포괄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식민지 시대의 유산 연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III. 식민지 시대의 상황과 전환기 정의의 도전

8.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식민주의의 결과인 권리침해의 유산을 살필 것이다.

(a) 식민국가 등의 상황에서 선주민이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추방과 억압.

(b) 현재는 독립국이 된 전 식민지. 이러한 상황에는 권리침해가 오늘날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A. 선주민이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추방, 억압해 온 식민국가 등의 상황

9.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여 정착한 이주자들이 선주민의 토지와 자원을 수용하고 그들

을 추방하고 수탈했다. 선주민 인구는 수탈로 인한 질병과 때로는 제노사이드와 같은 학살의 결과 극단적으로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주자의 지도권을 지지하는 '배제의 문화적 논리'라고도 해야 할 것이 있었다⁶⁾. 이에는 침략과 수탈, 거류지나 시설 수용,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특징을 가지는 동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10. 이러한 상황에서 구금된 사람 중에 선주민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 선주민이 안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 선주민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불이익, 선주민이 받은 학대의 완전한 시정을 위한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관여의 부족 등 식민지주의의 강한 영향은 여전히 분명하다⁷⁾. 식민지주의는 식민지화된 사람들을 차별, 동화, 범죄화, 때로는 폭력에 의해 복종시켜, 조상 전래의 토지나 자원의 소유권, 사법·건강·교육·경제의 기회에 대한 액세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법적,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통해 그것을 영속시키는 국가를 초래했다.

11.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된 전환기 정의의 프로세스가 식민지화된 사람들이 아직도 당하고 있는 지배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으면 경우 실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전환기 정의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권리침해를 가능하게 만든 사실과 조건의 입증, 책임 승인과 공적 사죄, 개인적 및 집단적 행동, 희생자의 기념과 존엄 회복, 행해진 권리침해의 정확한 설명을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등, 이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12. 구성 요소 중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억압적인 기준과 구조 및 선주민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부정을 유지하는 물질적 및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알아내고 개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에서, 재발 방지 보증이다.

13. 현재의 전환기 정의에 관한 제도 중에는 1975에 설립되어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기타의 대응을 하는 뉴질랜드의 와이탕기 법정과 같이 몇 년 전에 설립된 것도 있다. 보다 최근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식민지 시대의 유산에 대처하는 전환기 정의의 제도가 구축되었다.

6) Jennifer Balint and Julie Evans, *Transitional Justice and Settler States* (Sydney, Institute of Criminology, Sydney Law School, University of Sydney, 2011), p. 6. 참조.

<https://ses.library.usyd.edu.au/bitstream/handle/2123/7361/Balint%20and%20Evans%20ANZ%20-%20CCC2010.pdf?sequence=1>

7) 상계서

14.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으로서,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 팔레스타인 점령지, 서사하라, (일본은 그들을 선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민의 다수가 류큐 사람 (또는 오키나와 사람)인 오키나와와 같이, 이주자가 영역에 도착해 선주민을 추방했지만, 이들 선주민이 총인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15.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남아 있는 식민국가에서는 조직적인 인종차별, 경찰에 의한 폭력, 범죄화, 빈곤, 기회 결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주민의 불균형한 고비율을 포함한, 경제가 직면한 노예제에 기인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수 세기에 걸쳐 받고 있던 조직적인 억압, 경찰에 의한 폭력, 인종적 부정의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틀로 여겨지고 있는 전환기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시민과 사회운동(black lives matter 등)이 요구하는 경찰 개혁, 형사소추, 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남부 연합의 상이나 심벌 철거, 배상금 지급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2021.4.14 하원 사법위원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배상 제안을 연구 개발하는 위원회법(법안 H.R.40)을 하원에 회부하여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의했다. 그 밖에도 진실, 배상, 정의에 관한 공적 대처가 지방, 지자체, 주, 연방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B. 전 식민지 독립국

16. 제2의 범주는 식민지제국이 철수했지만 권력 구조, 특정 민족의 소외, 토지수용이 계속 유효한 상황이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독립 국가의 경우이다.

17. 이 상황에서 설립된 전환기 정의의 조치는 전 식민지 지배국과 전 식민지 독립국 간의 대화 필요하며, 그 조치의 성질은 이들 주체 중 어느 쪽이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지, 혹은 그 동기, 예를 들면 그것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혹은 둘 다에 따른 것인지에 의존하게 된다.

18. 최근의 독일과 나미비아의 합의는 피해를 받은 커뮤니티의 참가를 얻지 않고 협상한 것이었지만, 헬레로인과 나마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일부 유보했지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보상으로서의 개발 원조가 포함되어 있다.⁸⁾

⁸⁾ 이 문제에 대한 청원서는 아래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change.org/p/the-president-of-the-republic-of-namibia-no-bilateral-genocide-negotiations-we-demand-global-ovaherero-nama-representation>

19. 이러한 경우는 2개 국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과거 또는 계속적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양측이 타협해야 할 의무와 기대가 있다.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진실과 기억에 공헌하며 공문서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쉽게 하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분명히 전 식민지 지배국에 부과된다.

20. 새로운 국가 수준의 관리자로서 독립을 이룬 국가는 의무도 져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식민지 지배국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재할, 사회경제적 재통합, 사법·교육·보건·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보증, 또한 진상규명과 기념에 관한 것이다. 사법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의 강제 이주나 수탈을 수반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이주자와 같은 (생존하고 있는) 가해자가 새롭게 독립한 국가의 관할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국가는 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의무를 진다. 그런 때에는 국내 사법기관의 능력개발과 초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책임 추구 기구 설립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21. 2021.1, 대한민국 서울의 법원은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성노예로 한 것에 대해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1.4에는 피해자 그룹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IV. 식민지 지배와 역사적 부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전환기 정의의 구성 요소

A. 책임 추궁

22.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이다. 관습 국제법도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23. 전 식민지 지배국 중에는 제기된 행위 시점에서 유효했던 형법의 규칙만이 적용된다는 시제법의 원칙을 원용하고 국제 군사 법정의 뉘른베르그 헌장, 세계인권선언,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등 국제형사법상의 범죄로서 지정되기 이전의 범죄에 대한 소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중에 행해진 특정한 인권 침해는 그 분류가 사후적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로 분류된 것이다.

24. 민간인에 대한 폭격, 주민의 일부에 대한 강제 이주, 대량의 투옥, 고문, 강제 실종 등을 통해 식민지 지배국이 도전한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투쟁과 같이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발전이 시작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제기된다.⁹⁾

25. 전쟁범죄나 인도에 대한 죄의 실행은 이 시기의 식민지 전쟁에 공통된 특징이었지만, '국내법원이나 국제법원에서 식민지 범죄를 조사하거나, 생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관여한 정부를 제재하거나 범죄로 인한 현재 진행 중인 건강 문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¹⁰⁾.

26. 프랑스에서는 1968 사면법과 인도에 대한 죄의 한정적인 정의로 알제리에서 행해진 고문 기타의 범죄가 불문에 부쳐져 있다.¹¹⁾ 벨기에에서는 Patrice Lumumba의 죽음에 관한 벨기에 장교에 대한 고발이 예심 단계에서 10년 동안 보류된 상태이다.¹²⁾

27. 케냐의 마우 마우 커뮤니티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실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계승국이 부담해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에는 시효가 적용된다는 영국 정부의 항변을 영국 고등법원은 부정했다.¹³⁾ 2013, 정부는 2,000만 파운드의 배상금, 피해에 대한 사죄, 나이로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후의 법원 판결에서는 1980에 제정된 시효법이 적용되고 다른 케냐인 피해자들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¹⁴⁾

9) Wolfgang Kalek, "Double standards: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the West", FICHL Publication Series No. 26 (2015), pp. 25 -33, www.toaep.org/ps-pdf/26-kaleck; 및 Morten Bergsmo, Wolfgang Kalek and Kyaw Yin Hlaing (eds.), Colonial Wrongs and Access to International Law (Brussels, Torkel Opsahl Academic EPublisher, TOAEP publication seriesNo. 40, 2020), pp. 10-12, www.toaep.org/ps-pdf/40-bergsmo-kaleck-kyaw.

10) Morten Bergsmo, p. 12.

11) Stiina Löytömäki, "The law and collective memory of colonialism: France and the case of 'belated'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 vol. 7, 2013, 205-223, in particular p. 221.

12)책임 추궁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www.ohchr.org/EN/Issues/TruthJusticeReparation/Pages/CallLegacyColonialism.aspx

13) Théophraste Fady, "The Mau Mau case: post-colonial justice on the Strand", Strandlines, 7 October 2019, <http://www.strandlines.london/2019/10/07/post-colonial-justice-on-the-strand/>; 및 Leigh Day, "The Mau Mau case: five years on", 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q=a376823b-224d-4551-821d-abb7f32c8065. 참조

14) KEN 3/2021 and GBR 5/2021, 의 서한 참조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 .

28. 네덜란드에서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1945~195년) 때 네덜란드군 병사가 행한 침해행위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가 제출한 시효 주장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과부와 처형된 술라웨시섬의 남성 11명의 친족 및 전쟁 중에 처형된 모든 인도네시아인 유아에게 5,000유로의 보상을 약속했다.¹⁵⁾

29. 전 식민지 지배국의 주장은 다음 문서에 정해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시효 적용 금지에 반한다.

(i)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의 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

(ii) 국제인도법의 관습적 규칙¹⁶⁾

(iii) 불처벌과 맞서는 행동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촉진을 위한 업데이트 원칙 군¹⁷⁾

(iv)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¹⁸⁾

미주 인권 법원은 바리오스 알토스 대 페루 사건과 Dos Erres massacre 대 과테말라 사건 등 여러 판결로 시효 적용을 부정했다.¹⁹⁾

30. 또한 지속적인 성질의 범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식민지 시대의 많은 반식민지 저항 운동가들이 강제 실종의 희생자가 됐다. 강제 실종은 체포된 순간에 시작되어 국가가 그 사람의 구속을 인정하고 완전한 보장이 있는 합법적인 구속으로 전환하는지, 그 사람이 살아서 발견되는지,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되는 전형적인 지속적 범죄이다. 따라서 '불소급의 기본 원칙에 상관없이 강제 실종이 시작된 후에 제정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실종실행자를 유죄로 할 수 있다'.²⁰⁾

15) 로이터 통신, "Netherlands offers compensation to children of executed Indonesians", 19 October 2020, 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indonesia-compensation-idUSKBN2741XY.

16)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 -Beck,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 1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614 -618 참조 www.icrc.org/en/doc/assets/files/other/customary-international-humanitarian-law-i-icrc-eng.pdf

17) [E/CN.4/2005/102/Add.1](http://www.unhcr.org/refugees/article/43c3e311.html), 원칙 23

18) [총회결의 60/147](http://www.unhcr.org/refugees/article/43c3e311.html), 별지, 원칙 6

19) 미주인권법원, Case of Barrios Altos v. Peru, Judgment of 14 March 2001 (Merits), para. 41, and Case of the "Las Dos Erres" Massacre v. Guatemala, Judgment of 24 November 2009 (Preliminary objecti on,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 para. 233 (a).

31. 또한 국제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위반은 이를 수행한 국가, 이 경우에는 식민지 지배국의 책임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행해진 당시, 식민지와 보호령은 식민지 지배국에 의해 관리되어 있던 종속 영역이며, 독자적인 국제적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식민지의 지위를 고려하면 거기에서 태어난 독립국에 책임이 계승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신국가는 재발 방지 및 기타 조치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32.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한 가해자, 피해자, 증인의 사망 때문에, 가해자를 소추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미 선택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²¹⁾ 이 한계를 고려하면, 전환기 정의의 다른 구성 요소를 적절히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B. 진상

33. 진상규명 활동은 과거의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모아 불처벌과 맞서며 법의 지배를 회복하며 화해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한다.²²⁾ 특히 식민지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배상의 일부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4.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될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해야 할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인권 침해를 다루는 때에는 특히 당연한 일이다.

35. 전통적인 전환기 정의 과정의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권리 침해를 대상 외로 하는 근시안적인 것이었다. 동티모르에서는 토지를 빼앗긴 것은 식민지 시대였으며, 그 후의 구조적인 불공평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75 인도네시아에 의한 침공 후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남아프리카에서는 1948에 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인종 격리 정책의 초기 윤곽을 확립한 네덜란드와 영국의 복잡한 식민지 착취의 역사는 검증되지 않았다. 르완다에서는 벨기에 식민지 시대의 과거가 1994 대학살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 문제는 국내·국제 수준의 법적 절차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20) [A/HRC/16/48](#), p. 12, para. 5.

21) Morten Bergsmo, p. 38.

22) [A/HRC/24/42](#), para. 20.

36. 시한적인 위임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검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위원회에 부과된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이행기 상황에서 설립된 40개 이상의 진상규명위원회 중 식민지 시대를 다루거나 그 시대에 뿌리를 둔 경제적·사회적 부정의를 검증한 것은 거의 없다.

37. 이러한 위원회 중에서도 탁월한 것은 (분쟁이나 권위주의 체제 이후의) 고전적인 이행기에 설립되어 입은 권리침해를 보다 포괄적으로 조사한 일부 진상규명 메커니즘이다.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배상이나 경제개혁에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케냐,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의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그것을 일으킨 경제적 부정의를 검증했다.

38. 식민지 시대의 과거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한 여러 진상규명위원회도 있다. 모리셔스의 '진실과 정의위원회'(2009~2011)에서는 다양한 식민지 시대를 포함해 1638 이후 노예제 유산의 영향을 검증했다. 튀니지의 '진실과 존엄 위원회'는 그 수임 사항에 독립 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05부터 2005까지의 기간을 검증했다. 콜롬비아의 '진실규명, 공존, 재발 방지위원회'는 선주민 커뮤니티의 경험을 포함해 분쟁의 기원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룬디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임무는 1885 이후에 이루어진 식민지 범죄 조사로 확대되었다.

39.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과거에 대한 이러한 어프로치 중에는 표면적이거나 불충분한 것도 있었다. 라이베리아의 '진실화해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난 분쟁의 근원을 연구했지만, 분쟁을 조장한 식민지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케냐의 '진실·정의·화해위원회'는 국가 설립에서의 식민지주의의 역할을 조사했지만, 그 일시적인 관할권은 케냐가 독립한 날부터만 유효하다.

40. 일부 고전적인 이행기 상황에서 채용된 프로세스 외에, 식민국가나 전 식민지 지배국에서 선주민이 입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다루는 것을 명확한 목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41. 캐나다에서는 1500부터 1996까지를 조사한 '왕립 선주민위원회'(1991~1996), 1874부터 1996까지 선주민 학교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를 조사한 '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 (2009~2015)', 실종하고 학살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관한 전국 조사'(2016~2019년)가 설립되었다. 호주에서는 선주민과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의 아이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인권·기회 균등 위원회'(1995~1997)와 유럽에 의한 식민지화가 빅토리아주의 선주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유루크 정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2021부터 현재까지).

42.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그린란드 화해위원회(2014~2017), 서미(Sápmi)인과 쿠벤(Kven)인(핀란드계 노르웨이인)에 대한 노르웨이화 정책과 부정을 조사하는 위원회(2018~현재), 스웨덴 토르네다리안(Tornedalian)인, 쿠벤인, 란타라이세트(Lantalaïset)인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2020부터 현재까지)와 같이 선주민이 입은 토지 수탈과 동화 정책을 조사하는 기구가 설립되고, 스웨덴의 서미 커뮤니티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핀란드의 서미인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도 계획되고 있다.

43. 전 식민지 지배국에서도 진상규명의 대처가 이루어졌다. 2020.7, 벨기에 연방 의회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호응하여 자국의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²³⁾ 최근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검증하는 ‘기억과 진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시의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²⁴⁾

44. 독립을 이룬 국가도 진상규명의 대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 케냐 국가 토지 위원회는 킵시기스(Kipsigis)인과 탈라이(Talai)인이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역사적 부정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영국 정부, 케냐 정부, 및 이들 희생자에서 수용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니제르에서는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가 몇 세대에 걸쳐 커뮤니티에 기초를 둔 비공식적인 조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의 과거에 관한 정식의 진상규명 조치는 창설되어 있지 않다.²⁵⁾

45. 식민지 시대의 과거나 노예제에 기인하는 인권 침해를 검토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는 행해진 위반행위, 그 결과로서의 행동양식, 관계하는 권력 구조, 또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는 계속되는 식민지 시대의 관습이나 기준, 프로세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절히 입증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46. 식민지 시대의 유산에 충분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불공정이나 미해결의 불만이나 요구 등) 현재의 일들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사실을 우선해야 한다. 이 관련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진상규명 활동은 정치적·역사적인 신뢰성을 잃을 가능

23)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24) “France is confronting its history in Algeria”, The Economist, 15 May 2021,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1/05/13/france-is-confronting-its-history-in-algeria>.

25)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성이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 수 세기에 걸친 일들의 연쇄나 그 성질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실이 존재하고, 본격적이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7. 캐나다에서 실종되어 학살당한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관한 전국 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선주민이 받은 고통을 다루며 선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현대의 신체적 폭력을 식민지 피해의 넓은 상황 속에서 평가할 수 있었다.²⁶⁾

48. 선주민의 아이들이 다니던 기숙학교 터에 수백명의 아이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을 받아 캐나다 선주민이 제기한 소송과 같이 진실을 철저히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49. 동시에, 선주민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 억압, 수탈, 소외 정책이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러한 정책의 계속을 조장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전 식민지 독립국의 경우 독립했을 때 권력 구조가 개혁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의 일부가 계속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후속 분쟁이나 인권 침해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받은 커뮤니티에 대한 소외가 독립 후에도 계속된 경우가 많다.

50. 진상규명위원회의 성공과 식민지 시대의 유산에 임하는 프로세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의 전환기 정의 프로세스 설계부터 효과적인 실시의 감시에 이르기까지의 전면적 참가가 필수적이다. 벨기에의 시민사회와 전 식민지에서의 이민은 이 나라의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검증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²⁷⁾

51. 유루크 (Yoo-rrook) 정의위원회는 광범위한 어프로치와 피해를 받은 커뮤니티가 참여한 좋은 예이다. 위원회 5명 중 3명이 빅토리아주의 선주민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여성이다. 선주민 커뮤니티에 의한 오랜 활동을 거쳐 설립된 이 위원회는 식민지화 이후 빅토리아주의 선주민에 대해 행해진 역사적인 조직적 부정(문화유산 파괴, 학살, 전쟁, 아이의 강제 이송 등)과 현재의 조직적 부정(경찰의 문제, 젊은이를 포함한 범죄화 문제, 아이의 보호나 건강, 의료 결여 등)를 조사한다. 위

26)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Reclaiming Power and Place: The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vol. 1a, http://www.mmiwg-ffada.ca/wp-content/uploads/2019/06/Final_Report_Vol_1a-1.pdf.

27)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원회는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적 부정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방법을 결정한다.²⁸⁾

52.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사실조사를 손쉽게 만들기 위해, 식민국가, 전 식민지 지배국, 전 식민지 독립국은 필요한 정보나 공문서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상 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전 식민지 지배국, 특히 벨기에나 영국에서는 공문서에 대한 액세스에 문제가 있었다.²⁹⁾ 또한 로마 교황청은 특정 식민지 상황에서 설립된 가톨릭 시설에서 벌어진 일련의 권리침해를 밝힐 수 있는 로마 교황청이 관리하는 공문서에 액세스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53.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부끄러운 범죄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진상규명과 그 출판·보급은 이러한 부정론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54. 특별보고자는 진상규명이 불가결한 요소라고 해도 전환기 정의의 프로세스의 종착점이 아닌 것을 상기한다. 피해자들은 종종 진상의 노출이 다른 필요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안고 있다. 전환기 정의는 여러 구성 요소와 전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평화 구축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그러한 구제 조치가 변명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C. 배상

55. 배상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는 전환기 정의의 구성 요소이다. 어떤 조치가 배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진실, 정의, 재발 방지 보증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³⁰⁾

28) First People's Assembly of Victoria, "Yoo-rrook Justice Commission",

<http://www.firstpeoplesvic.org/our-work/truth-telling/yoo-rrook-justice-commission/>

[/yoorrookjusticecommission.org.au/www.firstpeoplesvic.org/our-work/truth-telling/yoo-rrook-justice-commission/](http://yoorrookjusticecommission.org.au/www.firstpeoplesvic.org/our-work/truth-telling/yoo-rrook-justice-commission/) 및, Government of Victoria, "Truth and Justice in Victoria", <http://www.aboriginalvictoria.vic.gov.au/truth-and-justice>

29)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및 Théophraste Fady, "The Mau Mau case: post-colonial justice on the Strand", Strandlines, 7 October 2019, <http://www.strandlines.london/2019/10/07/post-colonial-justice-on-the-strand>

30) [A/69/518](#), paras.3 and 11.

56. 구제와 배상을 받는 권리의 국제적인 법적 근거는 현재 각국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복잡한 국제인권문서의 집합체 안에 확실히 제시되었다.³¹⁾ 2005 총회에서 컨센서스를 얻어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성문화한 것이다.³²⁾

57. 식민지주의나 노예제 등의 인종적 불공정에 기인하는 권리침해 상황에서는 배상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한편으로 배상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반환은 범한 권리침해가 중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 또한 완전한 원상회복, 즉 점령 전 상황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달성 곤란하다. 다만, 수용된 땅이나 문화유산의 반환 등 일부 형태의 반환은 가능하며, 통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된다. 더욱이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느 피해자를 배상의 수혜자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58. 1997에 El Hadji Guissé가 작성한 인권 침해 가해자의 불처벌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희생자'의 정의를 자손이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까지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³³⁾ 하지만 2005 기본 원칙·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 손실은 인정된 피해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정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침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자와 그 근친으로 한정되었다.³⁴⁾ 국제형사재판소는 '배상의 목적을 위해서는 생활계획 상실, 가족이나 커뮤니티의 개별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겪은 것 등 세대를 넘은 트라우마에 의해 피해자 개인이 겪은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신고된 피해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³⁵⁾

59. 또한 전 식민지 지배국이 법적 책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제

31) 세계인권선언(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제6조), 고문 및 기타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품위를 다치게 하는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조약(제1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제39조),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조약(제3조), 1949. 8. 12 제네바조약 추가 의정서(제4조) 국제 무력 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 8. 12 제네바조약 추가 의정서(제91조),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68조, 75조).

32) [A/69/518](#), para. 18.

33) [E/CN.4/Sub.2/1997/8](#).

34) [총회결의 60/147](#), 별지, 원칙 8.

35) 국제형사재판소, The Prosecutor v. Bosco Ntaganda; Public Reparations Order, March 2021, ICC-01/04-02/06, para. 75, https://www.icc-cpi.int/CourtRecords/CR2021_01889.PDF.

공된 보상이 배상임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권리침해가 있었고, 그 침해가 오늘날의 체계적인 불평등과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이어지는데, 그것이 전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 대신에 개발 협력 등 책임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원조가 이루어진다.

60. 하지만 개발 원조는 식민지 시대의 복종 히에랄키에 근거한 경제적·정치적 시스템을 영속, 강화하는 것이고, 진정한 배상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배상은 전 식민지 지배국이 전 식민지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전임자가 밝힌 것과 같이 개발 프로그램은 엄밀하게는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발 프로그램은 오히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수혜자의 반드시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긴급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³⁶⁾

61. 최근의 독일과 나미비아 공동선언에서 독일은 개발과 부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틀에서 앞으로 30년간 11억 유로를 제공할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독일은 배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였다.³⁷⁾

62. 주목해야 할 것은 2019에 유럽의회가 유럽의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그 속에서 '일부 가맹국이 과거의 부정과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의의가 깊고 효과적인 보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 'EU 기관과 기타의 가맹국이 이 예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³⁸⁾

원상회복

63. 식민지화된 사람으로부터 수탈한 토지의 반환은 식민주주의의 희생자를 위한 배상 요구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이주민이 점거한 땅에 정착한 국가에서도 독립전쟁에 패한 뒤 이주민의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퇴거한 국가에서도 조상대대의 땅에서 추방된 식민지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회수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 땅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주민 정부와 선주민 살해, 토지 탈취에 관여한 사람들, 심지어 다국적 기업의 손에 넘어간 채였다. 그 때문에 조상대대의 땅과 천연자원을 빼앗긴 커뮤니티는 생활, 일, 생계, 기본적 서비스, 문화적 수단, 사회적 결속력을 빼앗겨 수세대에 걸쳐 빈

36) [A/69/518](#), para. 41

37) 독일연방공화국과 나미비아공화국의 공동선언 www.dngev.de/images/stories/Startseite/joint-declaration_2021-05.pdf

38) 결의 2018/2899 (RSP) of 26 March 2019

곤과 배제에 빠져 왔다.

64. 특별보고자는 식민지화된 희생자들로부터 그들의 미래 세대에 인권에 대한 완전한 접근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자신들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의학적·심리 사회적 재활, 토지반환,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은 빈곤에서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배상을 긴급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상세하고 절실한 증언을 들었다.

65. 케냐에서는 국립토지위원회가 킵시기스인과 타라이인의 상황에 대해 다른 조치와 함께 특히 아래의 조치를 권고했다.

(a) 영국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것.

(b) 케냐 정부는 케냐 독립 후에 반환되어야 했던 킵시기스인과 타라이인의 땅이 불법으로 빼앗겼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

(c) 영국 정부와 그 땅에 존재하는 다국적 재차 기업이 학교, 병원, 도로, 박물관, 대학교를 건설하고 수도와 전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보상할 것.

(d) 다국적 기업은 상업적인 시가로 토지를 빌릴 것.

(e) 기한이 지난 차지는 관계국 정부의 합의 없이 갱신되지 않을 것.

(f) 케냐 정부는 킵시기스인과 타라이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기 위한 땅을 확정하고 취득할 것.

66. 이 종류의 기관은 피해자나 그 자손이 자국이나 식민지 지배국의 법원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그에 대한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67. 공예품, 기념비, 고고학적 유물 등 선주민이 빼앗긴 문화유산의 반환은 식민지 지배 후의 상황이나 식민국가에서의 배상의 또 하나의 불가결하고 현재도 미해결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사람들은 1928년부터 1929에 무덤에서 파내어 일본으로 옮겨진 26구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국가가 '관련된 선주민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의식 도구 및 유골 접근 (도달 또는 입수 및 이용) 및 / 또는 반환을 가능하게 할' 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⁹⁾

³⁹⁾총회결의 [61/295](#), 별지, art. 12, para. 2

68. 뉴질랜드에서는 1975에 제정된 보호대상물법(Protected Objects Act 1975)에 의해 식민지 시대에 국외로 반출된 유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립박물관의 'Karanga Aotearoa 본국 송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40개 이상의 박물관에서 마오리 유골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정부와 박물관은 고고학적 유물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타국과의 협정이나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에 NAGPRA (미국 선주민의 무덤 보호와 반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69.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본국 송환에 대한 제도적·법적인 주저와 장애가 우려해야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⁴⁰⁾ 그러나 최근에는 버밍엄 대학과 버밍엄 박물관·미술관에서 발견된 선주민의 유골 컬렉션이 호주의 전통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2021.4에 독일과 나이지리아의 문화·외무성이 발표한 바와 같이, 독일은 2022년부터 베닌 동화의 나이지리아 반환을 시작한다. 스위스의 많은 박물관이 식민지 시대의 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에 직면하고 있다. 스위스의 8개 박물관이 '베난 스위스 이니셔티브'에 참가해 브론즈상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나이지리아와 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멕시코의 야키 푸에블로와 협정을 맺고 마르소 코바를 비롯한 야키 컬렉션의 본국 송환을 시작했다.

재활

70. 식민주의의 피해자의 재활은 아직도 현안 사항이며 긴급의 과제이다. 식민지 후의 환경이나 식민국가에서의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의학적·심리 사회적 재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피해자는 수십 년에 걸쳐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의존증 등을 포함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체적 손상과 심신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 캐나다 선주민 기숙학교 피해자들은 이러한 증상을 많이 보고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기숙학교의 생존자와 그 자손은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이 관찰되고 있다.⁴¹⁾ 특별보고자는 케냐의 킵시기스인과 탈라이인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심신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탈식민지화 이후 수십 년간 재활 조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다.⁴²⁾

40) 국제박물관회의, "International repatriation of human remains of indigenous peoples", 8 August 2 018, <https://icom.museum/en/news/international-repatriation-of-human-remains-of-indigenous-peoples/>.

41) CBS News, "Residential school survivors and their descendants show poorer health outcomes: survey", 14 March 2018, <https://www.cbc.ca/news/politics/residential-school-health-survey-1.4576430>

42) KEN 3/2021 and GBR 5/2021, 의 서한 참조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

71. 식민지 지배국 또는 식민국가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재활의 형태로 배상을 해야 한다. 전 식민지 독립국의 정부는 자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장자로서 이러한 수탈된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

만족

72. 공적 사죄는 식민지화된 사람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죄의 성질과 사실의 승인, 사죄하는 당국, 받아들인 책임, 사죄의 과정에 피해자의 참가와 수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죄의 효과는 피해 커뮤니티나 피해자의 후손이 사죄의 과정에 참여하고 사죄가 진정한 것으로 인식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다르다. 한편으로 사죄의 제스처가 다른 배상 수단이나 진상규명이나 기념 등의 전환기 정의의 조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상징적인 것에 머물게 된다.⁴³⁾

73. 캐나다 정부는 2008, 2017, 2020에 선주민 기숙학교에서 캐나다가 한 역할에 대해 선주민에게 사죄했다.⁴⁴⁾ 벨기에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벨기에가 저지른 잘못이 1994의 투치인 대학살의 원인이 된 것, 1959부터 1962에 걸쳐 콩고에서 수천 명의 혼혈아를 납치한 것, 파트리스 루문바의 암살에서 벨기에가 한 역할에 대해 사죄했다. 다만 이러한 사죄는 배상을 수반하지 않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있다.⁴⁵⁾ 호주 정부는 2008, 호주 선주민, 특히 '흠쳐진 세대'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인종차별에 대해 사죄했다. 네덜란드 국왕은 2020.3, 인도네시아에 대해 식민지 지배하에서 행해진 정치적 폭력에 대해 사죄했다. 영국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화해의 일환으로 케냐에 사죄했다.⁴⁶⁾ 멕시코 정부는 마야인에게 식민지 지배하와 독립 후에 행해진 학대에 대해 사죄하고 스페인 정부 및 로마 교황청에도 비슷한 사죄를 요구했지만, 마야 커뮤니티는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죄를 거부했다.⁴⁷⁾ 독일은 나미비아와의 합의 속에서 사죄했지만, 나마인과 헬레로인의 커뮤니티는 이 과정을 비판했다.⁴⁸⁾

43) document [A/74/147](#).에 이에 관한 권고가 있다.

44) 캐나다 정부, "Statement of apology to former students of Indian Residential Schools", 11 June 2008, <https://www.rcaanc-cirnac.gc.ca/eng/1100100015644/1571589171655>

45)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46)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Statement to Parliament on settlements of Mau Mau claims", 6 June 20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atement-to-parliament-on-settlement-of-mau-mau-claims>.

47)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48)아래의 청원서 참조

<https://www.change.org/p/the-president-of-the-republic-of-namibia-no-bilateral-genocide-negotiations-we-demand-global->

보상

74. 마지막으로, 배상의 한 형태로서 전 식민지의 채무 취소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은 식민지주의와 노예제가 전 식민지의 정부 채무를 만든 원인이며, 따라서 그 채무의 취소는 수익 상실, 즉 입은 피해에 의한 잠재적인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D. 기념

75. 과거의 침해, 그것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기념하는 조치는 전환기 정의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폭력적인 과거에 대처하고 화해를 촉진하려고 하는 모든 구조의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조치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특징짓는 오랜 불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한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식민국가, 전 식민지 지배국, 전 식민지 독립국은 발생한 권리침해, 그것을 일으킨 사정, 경향, 책임, 그에 의한 현재에의 영향과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기념하는 공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6. 케냐에서,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의 참가를 얻고 영국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 마우 마우 커뮤니티가 받은 권리침해를 기념하는 행동은 승인과 배상을 수반하여 커뮤니티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념의 흥미로운 예이다.⁴⁹⁾ 또 다른 예는 리버풀 국제 노예제 박물관 설립이다.⁵⁰⁾

77. 권리침해를 기념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에 머물지 않고, 특히 식민국가에서 식민지주의를 기념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캡틴 쿡 상륙을 기념하는 '호주의 날'이나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인종의 날' 또는 '미국 발견의 날'과 같이 선주민에 대한 공격적인 식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국가적인 행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매년 5월 26일 'National Sorry Day'가 개최되어 선주민에 대한 학대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

[ovaherero-nama-representation.](#)

49) Museum of British Colonialism, "Visit to the Mau -Mau Memorial", 11 July, 下記に掲載 <https://www.museumofbritishcolonialism.org/ourblog/2018/7/11/visit-to-the-mau-mau-memorial>.

50) 국제노예제 박물관, <https://www.liverpoolmuseums.org.uk/international-slavery-museum>.

78. 식민지 시대나 당시 활약한 인물을 기리는 동상은 많은 전 식민지 지배국이나 식민국가, 나아가 독립국에도 남아 있다. 니제르의 메이지르기 마을 중앙 광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중앙 아프리카 미션을 행한 프랑스 병사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지만 희생자의 기념비는 없다.⁵¹⁾ 이들은 식민주의 유산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역사적 기록이나 교육 커리큘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식민주의 기념물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브리스톨의 코르스톤 홀은 노예 상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수십 년에 걸친 항의 활동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데모 참가자에 의한 코르스톤상 파괴를 거쳐 명칭이 변경되었다.⁵²⁾

79. 기념 조치에서는 피해자 참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공적으로 추진·지원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리판·아파치 커뮤니티가 받은 피해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념 조치는 시민사회에서 태어났다.⁵³⁾

80. 어쨌든 희생자에 있어서 무의미한 기념 식전 개최로 논의를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튀니지에서는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매장 식전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피해자 단체는 그 식전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진실과 존엄 위원회에 제출된 이들 그룹의 탄원서 중 하나는 희생자(순교자) 유골이 적절한 존엄으로 취급되는 식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기억이란 피해자의 마음이나 고통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린다.

E. 재발 방지 보증

81. 재발 방지 보증은 이 보고서에서 다룬 침해의 상황에 관하여, 첫째로 법적, 헌법적, 제도적인 개혁, 둘째로 시민사회의 발전과 그 권한 증강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마련, 셋째로 교육, 예술, 문화 개혁이 포함된다.⁵⁴⁾

82. 국가의 기준, 제도, 프로세스는 식민국가에서 선주민의 취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실제로 인종주의와 선주민의 배제를 영속시키고, 특히 사법, 교육, 건강에 대한 액세스나 조상대대의

51)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52)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53)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54) [A/HRC/30/42](#)

토지 소유권 등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83. 경찰의 취급이나 폭력, 사법부로부터 받는 범죄화에 비추어 경찰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은 식민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주민과 아프리카계 커뮤니티의 요구의 근본에 있다. 미국에서는 블랙라이브스 마터 운동이 현안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안전을 위한 대체적인 지역 밀착형 조치에 대한 투자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브레스트 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⁵⁾

84. 개혁은 식민지주의의 잔재나 선주민이나 전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공적 절차, 실행, 공공시설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 니제르에서는 국가의 주요 간선 도로는 학살 생존자의 강제 노동으로 건설된 것이고 대부분 중앙 아프리카 미션의 루트를 따라 있다.⁵⁶⁾ 텍사스주에서는 도로의 간판이 식민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⁵⁷⁾

85. 선주민이나 전 식민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인권을 실효적으로 누리는 것을 보장하여, 그들의 권한 강화를 지지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발 방지의 핵심적 보증이다. 이 목적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입은 수탈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들과의 조약을 공포하는 것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호주에 협약이 없는 것은 호주 선주민과 비 선주민 간의 불충분한 참여와 관계의 증거이다. 빅토리아주 정부와 이 주의 선주민이 법적 보호 개선, 빅토리아주 선주민의 권리 강화, 권한 및 자원 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다.⁵⁸⁾

86.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사회와 미래 세대가 그 과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커리큘럼과 교재에 식민지주의 유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⁵⁹⁾ 또한 그들이 받은 폭력의 설명을 포함한 선주민과 전 식민지 사람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제노사이드, 아파르트헤이트, 인도에 대한 죄)를 견뎌내고

55) https://breatheact.org/wp-content/uploads/2020/07/The-BREATHE-Act-PDF_FINAL3-1.pdf

56)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57) 특별보고자의 질문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답

58) 빅토리아주 정부, "Treaty in Victoria", www.firstpeoplesrelations.vic.gov.au/treaty, 및 "Treaty process", www.firstpeoplesrelations.vic.gov.au/treaty-process.

59) [총회결의 60/147](#), 별지, 원칙 22.

그들의 자유, 사전,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의 협의의 중요성은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식민지 시대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을 청취하고 관여하는 측에 사려 깊고 계통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합의 협상의 참가 기준은 합의된 조치의 실시 대상과 동일하다.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 특히 전 식민지에서의 이주자를 포함한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가 적절히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91.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종군위안부'에 관한 협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비판되었다. 독일과 나미비아 정부는 그 협상에서 엄격한 비밀 유지에 합의했지만, 그 결과 어느 나라에서도 시민사회는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었다.⁶⁴⁾

92. 피해를 받은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협상 과정에도 참가하지 않는 경우 진정으로 회복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과거를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특별보고자는 강조하고 싶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새로운 희생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

V. 결론

93. 전환기 정의는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인권 침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귀중한 수단을 제공한다. 식민지 시대의 부의 이전과 인종주의적 억압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제의 유산을 만들어 내고,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이 역사적 부채의 방치는 한층 더 고통을 낳고, 인권 존중과 보장에 근거해야 할 국제제도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세대를 넘는 손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94. 최근의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전환기 정의 프로세스와 달리, 식민지 시대에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는 긴 시간의 경과로 인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95.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진상규명 과정과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그 영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평화롭고 지속이 가능한 미래의 기반으로서의 회복적 정의의 확립에 필수적이다.

⁶⁴⁾아래에 게재된 청원서

www.change.org/p/the-president-of-the-republic-of-namibia-no-bilateral-genocide-negotiations-we-demand-global-ovaherero-nama-representation

96. 식민지 시대의 과거에 대처할 전환기 정의의 조치는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피해자나 그 커뮤니티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무시할 수 없다.

97. 각국에 부과된 의무와 같이 실시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천되는 모든 수단과 제도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진상규명, 토지반환, 재발 방지 조치, 기념사업이라는 구성 요소를 중요시해야 한다.

98. 배상은 인도 지원, 원조, 개발 협력을 가장하고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고 회피할 수 없다.

99. 인종과 민족의 우위성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고방식은 일부의 정치적 발언에서 명시적으로, 국제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일어난 권리침해를 인식하고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현대의 차별과 인종주의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100. 식민지 시대의 인권과 국제인도법 침해의 유산에 대처하는 진상규명, 정의, 배상, 기념, 재발 방지 보증 조치를 통한 대처에 관한 책임과 기대는 전 식민지 지배국, 전 식민지 독립국, 선주민의 식민지화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억압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다르다. 하지만 특별보고자가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당국은 피해자나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의 오랜 불만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상황과 책임에 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VI. 권고

101. 특별보고자는 식민지 시대에 행해진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유산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전환기 정의 조치의 채용에 대해 다음의 권고를 한다.

참여

102.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되는 전환기 정의 조치의 설계·실시·평가는 피해자 및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의 실효적인 참가하에 그들과 영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진상

103. 전 식민지 지배국, 선주민의 식민지화나 아프리카계 주민의 억압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국가, 전 식민지 독립국은 오늘날도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폭력, 억압, 인종주의, 차별, 배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각각의 권한과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104. 이러한 프로세스는 위 3가지 국가에 보관되고 있는 조사 대상 기간과 관련된 공문서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을 수반하여야 한다. 또 종교단체 등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타 기관도 그 문서를 당국이나 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5. 진상규명위원회 제도의 멤버 뿐이 아니라 피해자나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 전체가 자유롭게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06. 기록을 미래 세대를 위해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확립된 윤리기준에 따라 공문서를 적절히 처리,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배상

107. 전 식민지 지배국이나 선주민 식민지화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억압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국가는 피해자나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배상은 개인적인 것도 집단적인 것도 포괄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피해자의 존엄 회복, 발생한 피해와 그 책임의 승인, 이에 관한 정보의 보급, 특별보고자의 총회에 대한 지난번의 보고서([A/74/147](#))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사죄의 표명을 포함한 만족.

(b)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토지 개혁 제도를 포함한 강탈된 토지의 반환을 위한 제도 및 /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과 커뮤니티 간에서 합의된 다른 토지의 교부를 위한 제도를 통한 토지와 천연자원의 반환, 및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유물의 반환.

(c)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동의한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한 보상.

(d) 신체적 및 심리 사회적 재활 및 주택, 건강, 교육, 수도 및 위생 설비의 이용을 포함한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 설비, 서비스에 대한 접근.

108.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놓여 있는 특정 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 원조 사업은 배상 프로그램의 적절한 대체가 되지 않는다.

109. 독립국은 107항(b) 및 (d)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자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장자로서 그 관할하에 있는 피해자 및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긴급한 필요를 보장해야 한다.

기념

110. 특정된 3가지 국가는 모두 이러한 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보급하기 위해 식민지화에 있어서 행해진 권리침해의 경향, 원인 및 결과, 그 오늘날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념 조치를 채용해야 한다.

재발 방지 보증

111. 선주민의 식민지화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억압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억압, 폭력, 배제, 인종주의를 영속시키는 국가의 기준, 구조,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개혁해야 한다. 또한 커리큘럼 개정을 포함하여 수반되는 물질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확인하고 개혁해야 한다.

112. 전 식민지 지배국 및 전 식민지 독립국은 자국 내의 법적·제도적 틀 및 물질적·사상적·문화적 조건이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실행, 혹은 기타의 지속적인 형태의 인종주의와 배제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책임 추궁

113. 전 식민지 지배국 및 식민국가는 인종적 억압이나 폭력 등을 포함한 식민지주의와 그 지속적인 영향에 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신청이나 배상 청구가 법적 또는 절차적인 장애 없이 처리되어 자국 법원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4. 인권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전 식민지 지배국, 식민국, 전 식민지 독립국은 책임 추구를 보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 인물의 인도를 추진해야 한다.

115. 이러한 사법절차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와 증인에게는 그 필요와 그들이 받은 권리침해의 특징에 적합한 보호제도와 법적 및 심리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16. 국제사회는 진실, 정의, 배상, 기억 및 재발 방지의 보증 조치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권리침해의 유산을 다루는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HOME](#)